

제 호

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대표자:
4. 기관 소재지:
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행정기관의 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